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518 발의연월일: 2022. 11. 29.

발 의 자:서영석·조승래·최혜영

문진석 · 인재근 · 이용빈

김영진 · 김병욱 · 도종환

고민정 · 김교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 목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취급을 허용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및 매매를 승인하고 있음.

그러나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과정에서 환자가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고 이후 양도까지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 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가 긴급한 환자의 불편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로 다시 접수되고,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 가 반복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

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수입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불편사항을 줄이고,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"을 "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·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"를 "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"로, "양도하려는"을 "양도하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- 가.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·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 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
- 나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 마약류취급승인자(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
- 다.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

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·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수수 등의 제한) ① (생	제9조(수수 등의 제한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	2
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	
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	
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,
어느 하나에 <u>해당하여 식품의</u>	<u>해당하는</u>
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	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
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	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
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	<u>의 승인을 받은</u>
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	
수	
<u><신 설></u>	가.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
	지・소유 또는 관리하는
	<u>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</u>
	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
	도하려는 경우
<u><신 설></u>	나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
	마약류취급승인자(제57조
	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
	제외한다) 또는 제4조제3

<신 설>

- 2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 마약 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
- 3.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·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

③ (생 략)

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 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 류를 양도하려는 경우

- 다.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 자 등인 마약류취급자·마약류취급장·마약류취급증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

③ (현행과 같음)